

의안번호	제183호
의결 연월일	2011년 6월 일 (제 301 회)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6월 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3
----------	-----

제출연월일 : 2011년 6월 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무분별한 논·밭두렁 소각에 의해 산불 오인출동이 빈번함에 따라 소방력 낭비가 초래되고,
- 전체 산불의 26%가 논·밭두렁 소각부주의에 의해 발생함에 따른 산림인근에서의 논·밭두렁 소각시 사전신고를 의무화 함.

2. 주요내용

-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 으로부터 100m이내의 논·밭두렁”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의
논·밭두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p> <p>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팩스 및 인터넷을 포함한다)이나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6호(생략)</p> <p>7. <신 설></p>	<p>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 6호(현행과 같음)</p> <p>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u>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의 논·밭두렁</u></p>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57조(과태료)

- 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산림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